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 제7장 제2절에 제27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

른 지식재산권의 매입(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의 매입을 포함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 ⑤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⑦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 관련 사항
 2.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현황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20에 제71호의15 및 제142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15. 법 제249조의23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42의9. 제271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등(이하 이 조

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매입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의 매입을 포함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 관련 사항
2.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현황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